2022. 9.

- 선진 국외 벤치 마킹을 통한 의정활동 강화 -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자료

당 진 시 의 회

(당 진 항 발 전 특 별 위 원 회)

- 선진 국외 벤치 마킹을 통한 의정활동 강화 -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자료

Ⅰ. 공무국외출장 취지 및 목적

○ 당진항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과 당진항의 전략적 발전방안 및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당진시의회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2022.7.19)

○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따라 해외 선진항만 시설견학을 통해 당진항 발전방안 모색하고, 선진 국외 도시의 활동상을 살펴봄으로써 당진시 발전을 위한 폭넓은 국제적 안목을 기르고자 함

○ 싱가포르 도시계획, 수자원관리, 당진쌀 판촉, 해안지역 관광개발 사례 등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시와 관련된 우수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우리시 정책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하고자 함

Ⅱ. 추 진 방 침

○ 해외 개발도시의 우수한 시책, 발전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정책 탐방형 국외출장 실시

○ 국제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마인드 향상 및 혁신적 정책 개발

○ 연수의원 개별 역할 분담을 통하여 연수보고서 작성 참여 의무화

⇒ 이를 토대로 공무 국외출장 보고서 작성

Ⅲ.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022. 11. 1.(화) ~ 11. 5.(토) / 3박 5일

○ 참석대상 : 시의회 의원 11

- **당진시의회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 윤명수 위원장 외 10명

○ 연수국가 : 싱가포르

※ 공식 방문기관
- 싱가포르 해양항만청(Singapore Maritime and Port Authority)
- 도시개발청 시티갤러리(The URA Center, Singapore City Gallery)
- NEWater 국립수자원공사 산하 하수처리, 수질관리 시설
- Clean & Green Products(당진쌀 수출업체)
- 센토사 섬 휴양생태시설
- 싱가포르 장애인 시설(Handicaps Welfare Association)

2 주요목적

○ 항만 인프라 및 선진항만 시설견학을 통한 당진항 발전방안 모색

○ 싱가포르 도시계획 사례 분석을 통한 당진시 적용방안 모색

○ 농산물 수출업체 방문을 통한 당진시 농산물 경쟁력 청취 및 홍보

○ 신 도시시설 벤치마킹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자료수집

○ 친수시설 개발을 위한 해양관광지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

3 총 예상 소요경비 : 32,096,470원

○ 소요경비 세부 산출내역 별첨

- 1인 항공운임, 체재비 및 준비금

 · 의장 : 2,882,170원 / 1인

 · 의장을 제외한 의원 : 2,541,430원 / 1인

- 공통 일반운영비 : 3,800,000원

4 공무 국외 출장 대상자 명단

소속	직위	성명	성별	비고
당진시의회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11명)	위원장	**윤명수**	남	
	당진시의회 의장	**김덕주**	남	
	위원	**심의수**	남	
	위원	**한상화**	여	
	위원	**조상연**	남	
	위원	**서영훈**	남	
	위원	**전영옥**	남	
	위원	**박명우**	남	
	위원	**김선호**	남	
	위원	**김명희**	여	
	위원	**전선아**	여	

Ⅳ. 세부 일정

일 자	장 소	교통편	시 간	연 수 일 정	비 고
11.1.(화) 〔1일차〕	인 천 싱가포르	 KE 645 전용차량	16:00 18:35 00:10	인천 국제공항 2터미널 3층출국장 G카운터 도착후 출국수속 인천 국제공항 출발 (비행시간 6시간35분) 싱가포르 국제공항 도착하여 호텔 투숙	
11.2.(수) 〔2일차〕	싱가포르	전용차량	10:00 14:00 16:00 18:00	▶공식방문 〔싱가포르 해양항만청〕 -싱가포르 항만 개발과 운영 ▶공식방문 〔 CLEAN &GREEN PRODUCTS 방문 〕 -당진시 농산물 수출 협약업체 ▶공식방문 〔 Handicaps Welfare Association 방문 〕 -싱가포르 장애인 시설 석식 및 호텔 체크인	
11.3.(목) 〔3일차〕	싱가포르	전용차량	10:00 14:00 19:00	▶공식방문 〔 싱가폴 '뉴워터' 친환경 물 재생 처리시설 시찰 〕 -싱가폴 국립수자원공사 산하 하수처리.수질관리 시설 견학 ▶현장견학 〔 클락키 수변광장 도시정비 재개발 사례 견학 〕 -수변 도시재생의 대표 사례 석식 및 호텔 체크인	
11.4.(금) 〔4일차〕	싱가포르	전용차량 KE 644	09:00 14:00 16:00 18:00 22:30	▶현장시찰 〔 마리나베이 bay front 역 견학 〕 - 마리나베이 샌즈역 복합환승센터 시설견학 ▶공식방문 〔 싱가폴 도시계획관 URA 방문시찰 〕 -도시계획전시관(CITY GALLERY) 시찰 ▶현장탐방 [센토사섬 휴양 생태시설 견학] -섬 전체가 휴양지 테마파크로 조성된 최고의 해양관광단지 석식후 공항으로 이동 싱가포르 국제공항 출발 (비행시간 6시간15분)	
11.5.(토) 〔5일차〕	인 천		05:45	인천 국제공항 도착	

1 주요방문지 및 방문목적

○ 해양항만청(Singapore Maritime and Port Authority)



- 주 소 : 460 Alexandara Road, mTower #19-00, Singapore 119963
- 전 화 : +65 6272 7777
- 내 용
 - 1996년 2월에 설립, 싱가포르 항만의 개발과 운영을 책임
 - 항만 규제 관리 업무
 - 해양 및 항만 관리를 위한 교육, 기술 지원프로그램 시행

⇒ 세계항만 도약을 위한 해양항만청의 역할과
싱가포르항과 당진항의 인프라 및 발전과정 비교 분석

○ 도시개발청 시티갤러리(The URA Center, Singapore City Gallery)



- 주 소 : 45 Maxwell Rd, Singapore 069118
- 전 화 : +65 6221 6666
- 내 용
 - 1999년 1월에 설립, 국가개발부산하의 도시개발청에서 관리

· 싱가포르의 역사와 도시의 변천사는 물론

이를 계획한 국가의 노력을 볼 수 있는 싱가포르 유일의 전시관

⇒ 최근 공동주택단지 개발 및 철도 개설 등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사례를 분석, 당진시 도시계획 분야에 활용

○ NEWater 국립수자원공사 산하 하수처리, 수질관리 시설



- 주 소 : 20 Koh Sek Lim Road, Singapore 486593
- 내 용
 · 식수 고갈이라는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수자원 확보 방안 연구
 · 한 번 쓰고 버린 오폐수를 정화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든 뉴워터 플랜 추진
 · 하수처리수 재이용 및 수돗물 정수 방법 소개 및 홍보

⇒ 수자원 지속가능성 개발에서 아시아 최고의 도시로 선정된 수자원 관리요법 벤치마킹

○ Clean & Green Porducts (당진쌀 수입업체)

- 주 소 : 190 Middle Road, #15-08 Fortune Centre, Singapore 188979
- 전 화 : +65 6266 7251
- 내 용
 · 쌀, 식품 등의 수입 및 도매업체
 · 2017년도, 당진쌀 및 당진농산물 세계 수출 관련 업무 협약

⇒ 당진시 농산물 경쟁력에 대한 의견 청취 및 홍보활동

○ 센토사섬 휴양 생태시설



- 전 화 : +65 736 8672
- 내 용
 · 싱가포르 정부 지원으로 관광단지로 조성된 인공섬
 · 해양스포츠 시설, 언더워터 월드 등 참여형 액티비티 시설과 해양박물관, 카지노 리조트 등 다양한 해양관광 기능을 복합화하여 국제적인 명소로 자리 잡음

⇒ 당진시 항만친수시설 조성을 위한 해양관광지 벤치마킹

○ 싱가포르 장애인 시설(Handicaps Welfare Association)

- 주 소 : 16, Whampoa Drive Singapore 327725
- 전 화 : +65 6254 3006
- 내 용
 · 신체장애인들의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진행
 · 장애인 자립 도모를 위한 사회적응 훈련, 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시설 방문을 통한 운영 시스템 비교 분석

Ⅴ. 심사내용

○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Ⅵ. 분야별 주요임무(과제)

연번	소 속	성명	업무분담
1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윤명수**	항만발전 분야 국외견학 총괄
2	당진시의회 의장	**김덕주**	국외공무견학 지원
3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심의수**	수자원 관리 우수사례 조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4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한상화**	선진국 장애인 시설 운영사례 조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5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조상연**	선진국 장애인 시설 운영사례 조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6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서영훈**	선진제도 및 행정시스템 분야 우수사례 조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7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전영옥**	당진시 농산물 수출분야 조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8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박명우**	도시계획 및 분야 우수사례 조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9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김선호**	도시계획 및 분야 우수사례 조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10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김명희**	해양문화관광 분야 자료조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11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전선아**	해양문화관광 분야 자료조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Ⅶ. 공무국외출장 기대효과

○ 공무 국외출장지의 공공 시설물의 운영현황 및 관련 정책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향후 지방의회 및 시정의 정책개발에 적극 반영하여 급속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시책 및 현안사업에 선진 국외 도시의 우수사례 등을 접목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아름답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

❍ 당진항의 기능 및 역할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진항시설 견학을 통한 전략적 발전방안 모색

❍ 싱가포르 선진항 시설 및 도시계획, 수자원관리, 당진쌀 수출 확대, 해양산업 관광 인프라 시설 등 벤치마킹을 통한 의정활동 반영

❍ 시설물 운영현황 및 관련 정책자료 수집·분석으로 향후 지방의회 및 시정 정책개발

❍ 선진 국외 도시 우수사례를 우리시 시책 및 현안사업에 접목함으로써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

Ⅷ. 공무 국외출장 경비 산출내역과 여비 지급 기준 : 붙임1

Ⅸ.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붙임2

Ⅹ.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 붙임3

〔붙임 1-1〕

공무 국외출장 경비 산출내역

■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의장 1명)

총 계(원)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보험료)
		소계	일비	숙박비	식비	
2,882,170원	1,254,300	1,602,870	176,490	963,890	462,490	25,000

- 세부산출내역(의장 1명)

구 분	산 출 기 초			산출금액($)	비 고
	등급	일수	기준액($)		
일비 (A)	가	3	17.5	52.5 (75,640원)	1인 기준
		2	35	70 (100,850원)	
숙박비 (B)	가	3	223	669 (963,890원)	1인 기준
식비 (C)	가	3	107	321 (462,490원)	1인 기준
운임 (D)	항공료	왕복		ECONOMY CLASS (TAX, 유류 할증료 포함) 1,254,300 원	※ 환율 : 1,440.80원 (2022. 9. 28.기준) ※ 여행지 등급 : 가
준비금 (E)	보험료			25,000원	1인 기준
산출금(F) (A+B+C+D+E)				2,882,170 원	

※「지방자치법 시행령」,「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국외여비(일비, 숙박비, 식비, 운임)를 산출

■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의장을 제외한 의원 10명)

총 계(원)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보험료)
		소계	일비	숙박비	식비	
2,541,430원	1,254,300	1,262,130	151,280	760,740	350,110	25,000

- 세부산출내역(의장을 제외한 의원 10명)

구 분	산 출 기 초			산출금액($)	비 고
	등급	일수	기준액($)		
일비 (A)	가	3	15	45 (64,830원)	1인 기준
		2	30	60 (86,450원)	
숙박비 (B)	가	3	176	528 (760,740원)	1인 기준
식비 (C)	가	3	81	243 (350,110원)	1인 기준
운임 (D)	항공료	왕복		ECONOMY CLASS (TAX, 유류 할증료 포함) 1,254,300 **원**	※ 환율 : 1,440.80원 (2022. 9. 28.기준) ※ 여행지 등급 : 가
준비금 (E)	보험료			25,000원	1인 기준
산출금(F) (A+B+C+D+E)				**2,541,430 원**	

※「지방자치법 시행령」,「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국외여비(일비, 숙박비, 식비, 운임)를 산출

■ 공통 일반운영비 (의원 11명)

구분	소요예산(천원)	산출기초	비고
차량임차비	3,800	(950*1대*2일)+(950*2대*1일)	기사 부대비 포함
총 계	**3,800**		

〔붙임 1-2〕

공무 국외출장 여비 지급기준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부의장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군·자치구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도의회 의장·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부의장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군·자치구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개정 2021. 5. 25.>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3. 생략				
4. 별표 1의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 의장	가	35	실비(상한액: 223)	107
	나	35	실비(상한액: 160)	78
	다	35	실비(상한액: 130)	58
	라	35	실비(상한액: 85)	49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의장을 제외한 의원	가	30	실비(상한액: 176)	81
	나	30	실비(상한액: 137)	59
	다	30	실비(상한액: 106)	44
	라	30	실비(상한액: 81)	37

※ 현지 차량임차비 일반운영비로 지급, 해당일 일비 50% 감함

〔붙임 2〕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정) 2012.01.01 의회규칙 제1호
(일부개정) 2018.12.28 의회규칙 제9호
(일부개정) 2019.03.15 의회규칙 제1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 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신설 2019.3.15.>
6. 기타 당진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 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 · 법조계 · 언론계 ·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

며,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3.15.>

③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9.3.15>

④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국외 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사한다.

1. 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국외출장자의 적합성

2. 국외출장 대상국 및 국외출장기관의 타당성

3. 국외출장 기간의 타당성 및 경비의 적정성

4. 기타 국외출장과 관련된 사항

⑤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8.12.28.>

⑥ 제2조제1호부터 제5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3.15>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이 공무국외출장 당사자일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8.12.28.>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

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⑥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당진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국외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시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15.>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3.15.>

제9조(국외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시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 가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시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시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하며, 구체적인 환수금액 및 환수기한 등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제12조(예산 편성 · 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시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 · 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시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제정 2012. 01. 01 의회규칙 제1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8. 12. 28. 의회규칙 제9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9.3. 15.의회규칙 제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5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